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3비합56 사채권자집회결의인가신청  
신 청 인 주식회사 에스티엑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대표이사 추성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김기영, 김선경, 이정환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윤근수  
사 건 본 인 주식회사 에스티엑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3  
대표이사 추성엽

주 문

별지 1 기재 사채에 관하여 2013. 11. 27.자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2 기재 결의를 인가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정본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3. 12. 26.  
법원주사부 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4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재판장 판사 고규정

판사 이재환

판사 황여진

印文



<별지 #1>

사채의 명칭	(주)STX 제 88 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공모사채	
사 채 종 목	무보증사채	
구 분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발행일	2010. 12. 3.	
권 면 총 액	200,000,000,000	
할 인 율(%)	0.00	
발행수익율(%)	5.9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20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는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발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채권의 권중 및 번호에 관한 사항은 구별기재하지 않음.	
이자율	연리이자율(%)	5.90
	변동금리부 사채 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 개월마다 연사채이율의 1/4 씩 분할하여 후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지급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자분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이자지급 기한	2011년 03월 03일, 2011년 06월 03일, 2011년 09월 03일, 2011년 12월 03일, 2012년 03월 03일, 2012년 06월 03일, 2012년 09월 03일, 2012년 12월 03일, 2013년 03월 03일, 2013년 06월 03일, 2013년 09월 03일, 2013년 12월 03일,
신용평가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등급	평가일자	2010년 11월 25일 / 2010년 11월 25일
	평가결과등급	A- / A-
주관회사 의 분석	주관회사명	대표주관 :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분석일자	2010년 11월 25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 환 방 법	본 사채의 원금은 2013년 12월 03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상 환 기 한	2013년 12월 03일
납 입 기 일		2013년 12월 03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 지급대행 기관	회 사 명	(주)우리은행 STX 남산타워업무팀
	회사고유번호	00149293
기 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li> <li>▶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li> <li>▶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09조 제 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li> </ul>		

<별지 #2>

제1호 채권재조정 의 건

-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을 취소하고, 기한이익상실 취소 통지의 권한을 모집수탁회사인 동양증권주식회사에 위임한다.
-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모집수탁회사인 동양증권주식회사에 위임한다.
- 사채모집위탁계약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2014년 3월 31일부터 만기시까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자기자본이 1억원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6항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다음의 항목을 추가한다.
  - (1) 파. 발행회사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에 대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발행회사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 (3) 발행회사가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신주발행을 결정하고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로 신주인수대금과 상계하거나 현물출자 하는 방법으로 그 신주인수를 청약하는 경우, 그 청약한 금액에 상응하는 사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
-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9항에 의한 사채의 상환기한(만기)은 2017년 12월 31일로 변경한다.
- 사채권자집회 결의일부터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8항에 의한 사채의 이율은 연 2%로 변경한다.
-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면제한다.
-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0항에 의한 이자의 지급기일은 만기시까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3일에 지급하며, 만기일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는 일할 계산하여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제2호 원리금지급방법 변경 건

-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그에 따른 절차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가 확정되는 날 이후 지체 없이 이행한다.

11. 원리금 지급방법 및 지급사무처리장소 : 사채의 원리금은 사채권자가 발행회사 자금팀(아래신고처)에 사채 등록필증 제출과 함께 신고한 원리금 수령계좌로 발행회사가 직접 지급하며, 사채권자는 사채를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원리금 수령계좌를 변경하려 할 경우 이를 즉시 상기 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게 재신고 해야 한다.

▷ ㈜STX 자금팀 공모사채 신고처 : 100-80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STX 남산타워 ㈜STX 자금팀